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922
------	-----

제출년월일: 2005. 7. 4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정이유

- 가.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 대두
- 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 확립 및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기능연계 필요
- 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체 설치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고성군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강화 (안 제2조)
- 나.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안 제3조)
- 다. 지역단위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확립 (안 제3조)
- 라.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안 제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 입법예고 : 2005. 5.23 ~ 6.11(주민의견 청취 결과 해당사항 없음)
-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표준 준칙안」을 따름

4. 본 문 : 붙임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주요세부 기능은 【별표1】과 같다.

②대표협의체는 고성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기능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 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복지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세부 기능(제2조제1항 관련)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심의·건의 하거나 자문에 응함

1.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 중요사항: 군수가 관할지역 안의 지역사회복지와 관련, 지역복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무협의체로부터 안건으로 상정된 제반사항

2. 다음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가.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 (6)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7)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촉진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복지기관·단체 복지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 (2)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 (3)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라.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체를 거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의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3.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검토·보호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체를 거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별표 2】

실무협의체의 주요 세부 기능(제2조제3항 관련)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협의하여 대표협의체 업무수행을 지원함

1.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 중요사항 :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할 사항과 동일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가.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촉진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복지기관·단체 복지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3)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라. 기타 군수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3.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의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검토·보호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5. 1~4 항목에 관한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

6. 1~4 항목에 관한 협의체에 심의·건의할 사항 검토 및 안건 상정

* 별도의 실무분과를 구성한 경우 사전 실무분과에서 분야별 안건의 검토 실시

7.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